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6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7일, 장흥순 의원 외 2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장흥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시기 이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예견된 상황에 있어 서울시 자체 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노력이 절박한 상황임.
-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생활폐기물

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.

- 본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(안 제 3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 영 배)

##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하고,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자원회수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##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을 20% 감축하며, 생활 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.

(단위 : 톤/일)

구 분	'12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년말
직매립량	719	400	119	0
시설용량) 확 총	3,048	3,300	3,300	3,750
재 활용	2,704	3,004	3,304	3,394

- 이를 위해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정해 주고,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해주고,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「자치구별 공공처리

1) 마포·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성능개선을 통한 시설용량(150톤/일) 확보, 수도권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(250톤/일),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(300톤/일) 등

시설 반입량 관리제」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.

-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회수 시설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행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 
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 
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 
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·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의 판매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전기요금 단가에 의한다. 다만,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난방열원의 판매단가는 수도권화력발전소의 지역난방열원 판매단가 및 지역난방열요금의 연동율을 감안하여 시장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